

# 2015년 이사회 회의록

1. 일시 : 2015년 7월 15일(수요일) 14:00 ~
2. 장소 :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전문요양원다목적실)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4번지
3. 참석 : 대표이사(임용택)  
: 이 사 박장수, 문귀근, 김종만, 이재홍, 박연희, 황옥순, 임우근  
감 사 김진산
4. 이사회 주요내용
  -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
  - 이사임명 심의
  - 정관변경 심의
  - 외부추천이사 심의
  - 기타안건

## 회의내용(요약)

법인국장 : 전체 이사 10명중 8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정관 제26조에 의거 이사회 개최가 성원되었습니다.

대표이사 : 더운날씨에 이렇게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 이사임명 심의, 정관변경 심의, 외부추천이사 심의, 기타안건을 가지고 이사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탁)  
나뉘드린 자료에 있듯이 2015년 추경예산(안)심의, 이사임명 심의, 정관변경 심의, 외부추천이사 심의, 기타안건입니다.

대표이사 : 먼저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입니다.

법인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국장 : 예 2015년 추경예산(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029,551천원에서 229,392천원이 증가된 1,258,943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기 설치 및 울산시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공사로 인해 보조금수입 증가와 전년도 이월금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비상문자동개폐기 설치공사 및 울산시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산조성비가, 예비비 증가입니다.

다음은 양로시설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798,133천원에서 10,890천원이 감소된 787,243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상반기 입소인 사망으로 인한 운영비 및 생계비,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인한 보조금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연장근로수당 계산식 변경으로 인건비 감소로 인한 사무비 감소, 지출항목 계정 변경으로 인한 재산조성비, 사업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요양시설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682,813천원에서 18,512천원이 증가된 1,701,325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법인전입금, 이월금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로 인한 사무비증가와 입소어르신 필요물품 구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입니다. 장기요양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 653,325천원에서 관.항.목 조정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64,220천원에서 관.항.목 조정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264,147천원에서 10,763천원이 증가된 274,910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증가와 전년도 이월금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지하 가스보일러실 공사 및 1층 주방 누수공사로 인한 재산조성비 증가입니다.

내서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선재어린이집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463,999천원에서 2,108천원이 감소된 461,891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교사변동으로 인건비감소와 누리과정지원금 변동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감소와 교사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공기질 측정비 및 프로젝트 연회비 감소로 인한 사무비, 사업비 감소입니다.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1,298,948천원에서

8,379천원이 증가된 1,307,327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정보  
화교육사업, 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사업 지원금 증가로 인한 보조금수입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진행등 사업비 전반적인 지출내역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  
예산 213,993천원에서 7,198천원이 증가된 221,191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지정후원금 및 비지정후원금 증가로 인해 후원금 증가  
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외부지원사업비(스포츠토토,에스오일)증가 및  
프로그램 진행비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114,465천원에서 8,833천원이 감소된 105,632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종사자 인건비(급여,제수당등)의 지출 감소로 인한 전입  
금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급여조정에 따른 급여외)감소, 업무  
추진비(회의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증가로 인해 사무비 감소입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2,128,070천원에서

101,930천원이 증가된 2,230,000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경상

보조금, 실버영화사업, 봄 어르신문화탐방사업, 성인문해사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등의 보조금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공동모금회지원 12인승 승합차량 구입으로 인한 재산조성비 증가와 실버  
영화사업보조금, 봄 어르신문화탐방사업보조금, 성인문해사업보조금,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보조금,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

사업비 증가입니다.

도솔천노인요양원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1,851,420천원에서 8,430천

원이 증가된 1,859,850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입소자 지정후원금

증가, 요양보호사 실습으로 인한 잡수입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입소정원 충족으로 인한 직원 수 증가 및 조리원 추가채용으로 인한

사무비 증가입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2,723,132천원에서

27,000천원이 감소된 2,696,132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도시락

배달사업 분리로 인한 보조금수입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도시락

배달사업 분리로 인한 사업비 감소입니다.

밀양시립노인요양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구관 전기 설비의

노후로 장마철에 잦은 누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량전기 설비와

노후된 설비교체공사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비상발전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각종 소모품 교체 및 비상시 전원 연결 공사로 인한 재산조성비  
입니다.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570,538천원에서  
83,420천원이 감소된 487,118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수입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수입의 감소입니다.

울산학대피해노인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184,846천원에서  
2,193천원이 감소된 182,653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법인전입금  
감소와 직원 식대비 기관지원금 감소로 인한 잡수입 감소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남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180,000천원에서  
관.항.목 조정입니다.

참세상장애인단기보호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209,103천원에서  
384천원이 증가된 209,487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자동제세동기 구입으로 인한 보조금수입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자동제세동기구입으로 인한 재산조성비 증가입니다.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2015년 1차추경예산 276,638천원에서  
36,181천원이 증가된 312,819천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북구다문화  
자녀 드림스타트 신규사업증가로 인한 보조금수입, 지정후원금 증가이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특별한 심화과정 및 지정후원금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수 :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시설에 맞게 잘 예산을 작성한거 같습니다.  
승인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2015년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이사 임명심의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국장 :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 10분중 9분의 임기가 2015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현재 대표이사님은 2018년 6월4일까지이며 이정근님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재임은 하지 않습니다.

박장수, 문귀근, 김종만, 김기수, 이재홍, 임우근, 박연희, 황옥순님의 임기는 2015년 7월 24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귀근 : 현재 이사님들은 자비원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자비원을 위해 일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중임을 하여도 될 거 같습니다.

김종만 : 같은 생각입니다. 중임하는데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예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이사 선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정관변경 심의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국장 : 정관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변경으로 인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입니다. 제6조(자산의 관리)에서는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 의결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문구 삽입입니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은 일부 확정 후, 사회복지시설의 문구 추가 삽입입니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로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시설, 3월 31일까지" 추가 삽입입니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제도 변경(법 제18조)으로 인한 이사정수 변경입니다. 3항 이사정수는 13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으로 변경입니다.

제16조(임원의 선임)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제도 변경(법 제18조)으로 인한 외부추천이사제도 시행에 따른 임원 선임 삽입으로 제16조 3항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4항은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삽입입니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은 법 개정으로 인한 제1항에 “이사, 제3항, 5분의1, 제2항에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25조(이사회 소집등) 2항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추가 삽입입니다.

제25조(이사회 소집등) 2항 1/3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때에 소집한다“는 삭제하며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때에 소집한다“ 추가 삽입입니다.

제26조(이사회 개회와 의결정족수) 2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삭제하며 3항 “이사회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삽입입니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삭제하며 제29조(이사회 회의록)은 법 25조에 따라 1항, 2항의 회의록으로 변경하고 제3항은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추가삽입입니다.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1항 2항 버섯재배사업은 삭제입니다.

제32조(전문위원회)는 삭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홍 : 법이 변경되었으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관변경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정관변경 심의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외부추천이사 선임 건입니다.

법인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국장 : 사회복지법인 이사제도 변경으로 인해 정관 제16조 3항 “ 이사정수의 1/3 (소수점 이하는 버림)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사외이사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8명을 추천받았는데 이중 4명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추천자 8명은 (전)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이셨던 문재철님, (전)울산남구참세상단기보호센터장이셨던 김현수님, 재가노인지원센터장 금동명님, 양산실비노인요양원장 김화경님, 늘푸른요양원장 김정희님, 부산대학교 교수이신 백승완님,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이신 유해종님, 영산대학교 교수이신 정명숙님입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수 : 사회복지법인 이사제도 변경으로 인해 사외이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법인에 도움이 되는 분을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철님, 금동명님, 백승완님, 유해종님을 선임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문귀근 : 이력사항이나 전문성을 보니 법인에 도움이 되는분들인 것 같습니다.

임우근 : 저도 추천명단을 보니 이분들로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대표이사 : 그럼 문재철님, 금동명님, 백승완님, 유해종님을 이사로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이사 : 예 대표이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표이사 : 사외이사로 문재철님, 금동명님, 백승완님, 유해종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경남학숙 재위탁의 건입니다  
경남학숙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남학숙 : 예산, 결산, 운영규정, 원장선임건 등 모든 권한이 경남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숙내에서 포교활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권한을 도지사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위탁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만 : 경남학숙은 오랫동안 자비원에서 위탁운영한 곳입니다. 재위탁 문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생각을 좀더 해보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임우근 : 저도 같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간 한 곳이라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생각을 좀더 해보고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의논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대표이사 : 예 이사님들의 의견대로 다음 이사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박장수 : 예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사님들의 생각대로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 경남학숙 재위탁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국장 :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 지침에 의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사업)은 “장애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주당 8시간 이상을 실시함”을 추가 삽입, 제8조(대상자 정원 및 선정과정)은 “18명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 추가 삽입입니다..

제10조(훈련생 및 근로장애인 근로자 관리) 1항은“9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로 하되,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2항은 “훈련생은



훈련규정에 따른다” 추가 삽입입니다. 6항은 “임금 지급일은 매월 30일로 한다” 추가 삽입입니다. 7항 퇴직금 8항 직업훈련지도 9항 환경정비 추가 삽입입니다. 제21조(연가보상비) 단, 연가사용계획을 년도 마감 6개월전, 3개월전 제출한 후 미사용시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 아니한다“ 추가 삽입입니다.

제52조(업무추진비의지출)은 경조비지출 추가 삽입입니다.

2항 교통비는 철도에 직업훈련교사는 ktx 또는 새마을호로 변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근 : 법이 변경되어 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승인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아나올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아나올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차량매각 관련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국장 : 아나올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차량의 차종은 스타렉스 벤(차량번호 88머 9001호), 등록일은 2007년 7월 13일입니다.

매각의사유로는 스틱차량으로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는 운행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위험이 높고 스틱 차량을 오토차량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으로 인한 이동시 차량 탑승 정원이 3명으로 제한되어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연희 :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나 등록일을 보니 사용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득이하게 매각을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요즘 운전자들이 스틱을 잘못하는데 운전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오토로 변환시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니 이것은 매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옥순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차량을 매각하는 것에 승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대표이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그럼 아나울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차량 매각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참세상단기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국장 : 참세상단기보호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규정변경내용은 기관분리 독립에 따른 기관명과 직책 변경이며 제2조 (적용)은 기관의 분리독립에 따른 내용 변경, 제12조(근무시간)은 근무시간 변경 및 용어변경입니다.

제33조(야근근무)는 근무내용 변경이며 제34조(야간 및 주말, 휴일 근무시간)은 근무형태 변경 및 시간 변경이며 제35조(야간근무 및 주말, 휴일근무 명령 및 변경)은 근무내용 변경입니다. 제36조(야간근무자의 의무)는 근무내용 변경이며 제37조(수당)은 수당내용 변경 제50조(고충 처리위원)은 고충처리위원 구성 변경입니다.

인사규정(안) 변경 내용은 기관독립에 따른 기관명과 직책 변경이며 제2조 (적용)은 내용 변경 제4조(직원의 임면)은 직원임면 내용변경, 제5조(직종 구분)은 직종구분 변경이며 제6조(인정경력)은 기관의 분리독립에 따른 내용변경 제10조(인사위원회 운영)은 내용 변경, 제23조(승급)은 삭제입니다. 제40조(포상절차)는 내용 변경, 제44조(징계의 예외) 내용변경입니다.

취업규정 변경내용은 기관 분리독립에 따른 기관명과 직책변경입니다. 제48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 내용 변경입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은 신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문귀근 : 울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관 분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관분리로 인해 규정을 변경해야 된다면 그건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 : 저도 같은 생각이고 이 부분은 승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대표이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그럼 참세상단기보호센터 운영규정 심의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다음은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법인국장은 말씀해 주십시오

법인국장 :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운영규정은 여비규정 제5조 여비 지급입니다.  
기존 여비규정이 미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임우근 : 효율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이 규정은 승인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대표이사 : 여러 이사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체이사 : 대표이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대표이사 : 그럼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운영규정 개정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 기타안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이사 : 없습니다.

대표이사 :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장시간동안 추경예산, 이사선임, 정관변경, 사외이사 추천등 여러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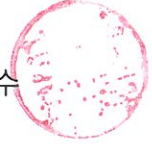
이사님들의 생각이 법인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사님들의 열정에 놀라웠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탁)

대표이사 임 용택



이 사 박 장수



문 귀근



김 종만



임 우근



이 재홍



박 연희



황 옥순



감 사 김 진산

